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74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4.

발 의 자: 박수민 · 윤영석 · 이종욱

권성동 • 강승규 • 윤한홍

강명구 · 조지연 · 이인선

고동진 • 박수영 • 박준태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 · 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제하는 항목에서 배당금은 제외 하고 있음.

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와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 낮은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. 또한,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요인인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장치의 도입이 시급함.

이에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0조의32제2

항제1호라목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의32제1항 중 "다목"을 "라목"으로, "임금"을 "임금, 배당"으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, "2027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내국인에게 지급된 다음 구분에 따른 배당금액의 합계액

- 1)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(「상법」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, 금전배당에 한정한다)
- 2)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배당·분기배당(「상법」 제 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 는 배당은 제외하며, 금전배당에 한정한다)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0조

의3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아 정 제100조의32(투자·상생협력 촉 제100조의32(투자·상생협력 촉 진을 위한 과세특례) ① 각 사 진을 위한 과세특례) ① -----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 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,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 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(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 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 한 금액을 말한다)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 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 여 「법인세법」 제13조에 따 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(2)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

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(산 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"미환류소득"이라 하고,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"초과환류 액"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 월(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 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사업연도[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(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)를 말한다]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(이하 이 조에서 "기업소득"이라 한다)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

	 ,
	•
1	· <u>2028년 12월</u>
1	· <u>2028년 12월</u>
	· <u>2028년 12월</u>
1	· <u>2028년 12월</u> 
1	· <u>2028년 12월</u>
1 <u>31일</u>	· <u>2028년 12월</u> <u>2030</u>
1 <u>31일</u>	· <u>2028년 12월</u> <u>2030</u>
1	· <u>2028년 12월</u> <u>2030</u>
1 <u>31일</u>	· <u>2028년 12월</u> <u>2030</u>
1 <u>31일</u>	· <u>2028년 12월</u> <u>2030</u>
1	· <u>2028년 12월</u> <u>2030</u>

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 제하는 방법 가. ~ 다. (생 략) <신 설>

2. (생략) ③ ~ ⑩ (생략) \_\_\_\_\_

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<u>라. 내국인에게 지급된 다음</u>

<u>구분에 따른 배당금액의</u>

<u>합계액</u>

- 1)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 금처분에 따른 배당(「상 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 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, 금전배 당에 한정한다)
- 2)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 한 중간배당·분기배당 (「상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, 금전배당에 한정한다)
- 2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⑩ (현행과 같음)